

## 문화재위원회 제 4 분과 위원회의 운영에 바람

金 東 旭

<文化財委員會 第4分科委員>

우리 제 4 분과는 문화재위원회 중 전통문화 보존과 육성의 막중한 부문을 맡고 있는 분과로서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다루고 있는 분과이다. 「살아남은」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자연인과 결부되어 있는 분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 1) 살아있는 전통문화가 무엇이냐?
- 2) 이런 전통문화를 제대로 발굴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전승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는가? 여기서 저해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 3) 앞으로 새로 발굴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 4) 현 문화재보호법의 애로는 무엇인가?

등으로 분설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는 짧은 지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생략하겠다.

###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찾자:

동양적인 전통적 개념으로 우선 문화를 나눌 때 의식주(衣食住)로 가르다. 이를 오늘의 문화의 개념 즉, 기술(技術)까지 합친 생활 문화(文化)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러므로 과거 2,000년 동안 우리 생활을 지탱해 온 모든 부문에 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변동과 산업화의 물결에 따라 우리는 많은 것을 흘려 버렸고 잃어버렸다. 특히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활의 골격이 되었던 무속(巫俗)이 송두리채 없어져가고 있다. 과거 우리의 세시풍속이나 통과례의 골격이 되었던 이 무속이 미신(迷信)이란 이름 아래 없애 버리는 동안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꽃피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 이 무속을 일본은 신도(神道), 신사(神社)라는 엄연한 사실로서 현재까지 살아있지 않은가? 단군(檀君)을 제사지내는 것은 미신이요, 이의 말단 조직인 동제(洞祭)나 산신제(山神祭)도 미신이요 하고 배격하는 동안 우리와 이질적인 신인 기독교는 종교라는 면에서 비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뜻있는 한국 사람을 우려케하고 있다. 우리의 신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전국민의 4분지 1이 살고 있다는 서울내에서 우리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냉정히 반성해봄직하다. 이런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과거의 문화재 제 2 분과, 현재의 제 4 분과는 무력하였다. 기껏 지정한 것이 강능 단오굿, 은산 별신굿, 등 무속이란 내용을 거세한 채, 다른 항목이나 사말적인 것으로 지정하였을 뿐이다. 아울러 시골에 갔을 때, 그 마을의 신은 어디에 있는가를 그 마을 사람이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전통문화는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데 우리에게는 조상의 묘는 있어도 그 마을의 성소(聖所)가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 국조신을 찾고, 한 고을의 신을 찾고 그 마을의 신을 찾는 일이 우리 문화재 제4과에 부과된 사명으로 안다. 애초에 5,000여 군데 있었다는 동제(洞祭)나 산신제의 현주소를 찾는 일은 주체성있는 국민으로 이룩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전통문화의 뿌리는 의식주의 생활을 향해 뻗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남아 있는 소도(蘇塗), 장승(長柱), 산신당(山神堂), 동제당(洞祭堂), 성황당(城隍堂), 여단(厲壇), 각종의 정문(旌門)등 민속적인 것을 용감하게 민속자료로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教會) · 불사(佛寺)는 동양이라면 어디에나 있다. 그러나 한국적인 것만이 한국적인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이 사라져 가는 것을 살려놓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과거에 미신이나 무속이라고 폄시한 여러 문화재를 이 시점에서라도 보존시키지 않으면 죄를 천고에 질지도 알 수 없다. 제주도에서는 무당이 경찰의 눈을 피하여 밤이 아니면 곳도 실수(實修)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아이로니칼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서 전통문화를 어디에서 구하겠다는 말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정부 차원에 새로 짓겠다고 한 단군 성당(檀君 聖堂)을 기독교의 반대로 우야무야된 것은 안타깝기 한이 없다. 시내를 돌아보면 여기저기 몇 억씩 들여가며 교회당은 짓고 있는데, 전국민이 몇 백원씩 추념하여 단군성당을 짓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말인가! 재고하기를 바랄 뿐이다.

### 전통 공예의 기능자를 찾자:

나는 작년에 일본의 전통공예의 전시회를 관람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0회째 하고 있는 전승공예전이다. 여기서 양국의 전통 공예에서 큰 차이를 느꼈다면 일본이 간사스 러우리만큼 그 제품이 정교한데 비하여 (나도 몇번 심사원으로 참여한 경험에 비추면) 우리나라의 것은 민속적인 특징이 있다는 자위 밖에 얻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기능 보유자의 끝마무리정신이 시원치 않음을 느꼈다. 이것은 두나라의 공쟁이정신(장인정신, 匠人精神)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기능보유자의 정성이 깃들 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몇해 동안에 우리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전통 공예면에서 완미(完美)한 것을 만들려는 기풍이 조장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기능보유자의 정신적 자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선시대의 유품을 볼 때에 느끼는 그런 완미한 것조차 전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래도 이대로 좌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문화재관리국에서 86, 88을 대비하여 전통공예의 기능보유자를 찾으라는 공문까지 시달하고 있지만, 이것을 찾는 일은 문화재 위원이나 전문위원에게 부과된 하나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오늘날 1983년 관 “문화재대관” 무형문화재편(文化財大觀, 無形文化財篇)에 수록한 것이 음악에 17가지, 무용에 5가지, 연극에 14가지, 놀이와 의식에 16가지, 공예기술에 24가지, 음식에 1가지, 무예에 1가지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뒤에 몇 개 더 지정하였지만, 여기에도 지정받기 위하여 과거의 전통양식에서 벗어나 현대화한 것도 약간 끼어있고, 전문위원의 활동과 기호에 따라 편벽된 것도 있어, 어느 부문은 많이 지정되어 다시 발굴할 여지가 없는 것도 있는 동시에 어느 부문은 전혀 미개지로 남아있는 것도 있는 것 같다. 현 무형문화재의 지정하지 않은 그 두드러진 부문이,

(1) 건축부문(목장(木匠), 죽장(竹匠), 석장(石匠), 개장(盖匠), 전장(磚匠), 선장(船匠), 염장(簾匠), 와장(瓦匠))

(2) 도자기부문(사기장(沙器匠), 옹장(瓮匠))

(3) 음식부문(간장, 된장, 고추장 등 민속식품류(民俗食品類))

(4) 공예 기술부문의

1) 염색부문(초염장(草染匠), 칠장(漆匠), 유칠장(油漆匠), 홍염장(紅染匠), 하염녹장(荷葉綠匠))

2) 악기부문(풍물장(風物匠), 황엽장(簧葉匠))

3) 죽세공부문(소장(梳匠), 전자장(扇子匠), 석장(席匠), 인장(茵匠))

4) 금속공예부문(야장(冶匠), 화빈장(火鑪匠), 도자장(刀子匠))

5) 표구장부문(배첩장(褙貼匠), 도배장(塗褙匠))

6) 문방사우부문(필장(筆匠), 인장(印匠), 표통장(表筒匠), 지장(紙匠), 각장(刻匠), 묵장(墨匠))

7) 의복부문(재작장(裁作匠))

(이는 대전회통(大典會通)을 기준으로 해본 것이나 생활(生活)의 변동(變動)으로 불필요(不必要)한 것도 있을 것이다).

등이다. 물론 이런 부문에 있어서도 과거에 전국적인 조사를 한 것도 있고, 그것이 이권과 관련지기 때문에 유형의 압력이 가해짐으로 해서 갈피를 못잡게 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현대까지 살아있는 문화재, 예를 들어 도자기, 술, 음식, 음악 등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기도 하고, 상호간의 질서 반목도 있어 금기적 부문이면서 또 절실히 보존이 요청되는 부문이기도 하다. 특히 86, 88을 겨냥한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외국인에게 보이게 위하여도 절실히 요청되는 부문이면서 이를 지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산적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준열하게 권위를 지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문인 줄 안다.

### 현 문화재보호법의 애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지목된 사람에는 법이 제정한 한도 내에서 이를 전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하여 과잉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인상도 불식할 수 없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다.

1) 전수, 이수, 이수의 한계를 가족 내에서 독점하고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2) 이미 획득한 기능보유자라는 간판 밑에 안주하면서 기능의 연마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이 전기한 일본의 기능보유자에게 뒤떨어지는 폐단을 낳고 있는 것 같다.

3) 가짜를 만들어 판 사람에게 기능보유자의 지정을 해주고 앞으로의 신칙을 다짐하며 웃음거리가 되었던 일도 있지만, 이들의 정신적 태도도 가끔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인정신(匠人精神)이 철저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4) 이들이 생산한 물건을 국가에서 고가로(때로는 외국 선물이나 특정인에게 권고하여) 매입하여 그들의 생계를 돕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 전통문화에 대한 사실박물관을 개인이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문화재보호법과 상속법을 개정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컬렉션의 보호도 아울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법이 개정되면 국내에서도 관광차원에서 100개 정도의 개인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6) 각지에 산재해 있는 향토사연구자나 군의 문화공보실, 문화원과 문화재관리국과 직접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정비도 아쉬운 것 같다. 명령계통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

은 혼선을 빚는 일도 많은 것 같다.

7) 민요나 민담(民譚)에 있어서도 그 임포먼트를 찾아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해주는 법안도 고려함직하다. 민속놀이의 경우는 쇼(show)화 한것도 있어, 그 원형을 보존하는 일이 바람직스럽다. 이미 설화에 있어서는 정신문화 연구원에 선편을 빼앗겼으나 각지의 공보실에 위촉하여 민속채집의 방법을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침서를 작성 배부하여 이를 수집하는 일도 시급하다. 이런 채집에 있어서는 옆나라 일본의 20분지 1도 못 미치고 있다.

8) 현재의 문화재위원회와 지방문화재 위원과의 유기적인 연락은 별로없다. 이는 1년에 한번이라도 연석회의를 갖고 지방문화재를 중앙문화재로 격상하는 방안도 구상해봄직하다. 이런 일은 중앙이니 지방의 관념을 심는 위화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하여야겠지만 한번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한 개인이 쓰는 요망보다도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